

서울특별시

우 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TEL (02)731-6221 / FAX (02)733-9535

문서번호 인사 01117-1041

시행일자 1992. 4.

(경유)

수신 각 안 참조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부시장	결결			
내무국장				
인사과장		법무담당관 인사기획제안 고과제장		0531
기안	보임계장			협조

제목 '92년도 2/4,3/4,4/4분기 명예퇴직 시행 계획

(제 1 안) " 내부 결재 "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4,3/4,4/4분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함과 아울러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안) : 별첨

나. 공고일 : '92. 4.30

다. 공고기간 : '92. 4.30-5.19. (20일간)

라. 신청기간

- 2/4분기 : 92. 5.25 ~ 5.29 (5일간)

- 3/4분기 : 92. 8. 3 ~ 8. 7 (//)

- 4/4분기 : 92.11. 2 ~ 11. 6 (//)

마. 명예퇴직예정일

- 2/4분기 : 92. 6.30

- 3/4분기 : 92. 9.30

- 4/4분기 : 92.12.31

(제 2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같 은 건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4, 3/4, 4/4분기 우리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 공고할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고 명예퇴직 희망자에 대하여 다음요령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가. 대상자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증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 2/4분기

· 5급이상(32.1.1 - 40.12.31사이 출생자)

· 6급이하(35.1.1 - 43.12.31 ")

- 3/4, 4/4분기

· 5급이상(32.7.1 - 41.6.30사이 출생자)

· 6급이하(35.7.1 - 44.6.30 ")

나. 신청기간

- 2/4분기 : 92. 5.25 ~ 5.29 (5일간)

- 3/4분기 : 92. 8. 3 ~ 8. 7 (")

- 4/4분기 : 92.11. 2 ~ 11. 6 (")

다. 명예퇴직예정일

- 2/4분기 : 92. 6.30

- 3/4분기 : 92. 9.30

- 4/4분기 : 92.12.31

라. 명예퇴직신청자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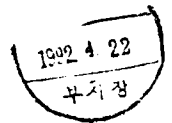
(1)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1부

(2)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A4복사)

(3) 연금카드 사본 1부 (A4복사)

(4) 공적조서 3부(1부는 공적조서의 조사자, 추천관 란에 기재하여 날인

서명하고, 2부는 여백으로 제출)



2. 자치구 및 소방본부는 본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신청, 접수,심사,특별승진,명예퇴직결정등 관계규정에 따라 일련의 적정조치를 취하고,그 결과를 7일이내 인사과장 참조 보고할 것이며,

3. 아울러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임식거행,퇴직수당산출 및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4.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승진 대상자는 인사 01100-1265(91.6.26)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4 제1항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 조치하기 바람.

첨부 : '92. 2/4,3/4,4/4분기 서울특별시 명예퇴직 시행계획 1부. 끝.

수신처 : 서과 1-68, 서사 1-43, 서구 1-22, 서본부 1-6, 시의회사무처,

(제 3 안)

수신 : 공 보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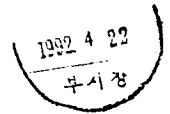
발신 : 인 사 과 장

제목 : 시보 공고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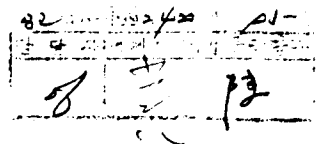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2/4,3/4,4/4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시보게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자 : '92. 4.30

첨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안 1부 **김열** 끝.



서울특별시



92年度 2/4, 3/4, 4/4分期 서울特別市 地方公務員 名譽退職施行計劃

地方公務員 名譽退職手當 支給規程 第5條의 規程에 의하여
1992年度 2/4, 3/4, 4/4分期 地方公務員 名譽退職에 관한 事項을
다음과 같이 公告합니다.

1992. 4. 30 .

서울特別市長

1. 名譽退職對象

2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및 기능직 지방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

○ 2/4분기

- 5급이상 (32. 1. 1~40.12.31 출생자)
- 6급이하 (35. 1. 1~43.12.31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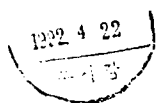
○ 3/4, 4/4분기

- 5급이상 (32. 7. 1~41. 6.30 출생자)
- 6급이하 (35. 7. 1~44. 6.30 출생자)

2. 名譽退職申請

가. 申請期間

- 2/4분기 : 92. 5.25 ~ 5.29 (5일간)
- 3/4분기 : 92. 8. 3 ~ 8. 7 (")
- 4/4분기 : 92.11. 2 ~ 11. 6 (")



나. 申請節次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자치구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3. 名譽退職 對象者의 審査決定 및 通知

서울특별시장은 명예 퇴직 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4. 名譽退職豫定日

- 2/4분기 : 92. 6.30
- 3/4분기 : 92. 9.30
- 4/4분기 : 92.12.31

5. 名譽退職對象者의 辭職願 提出

명에 퇴직의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6. 名譽退職優待

- 수당 지급 : 퇴직일부터 5일 이내 지급
- 수당 계산 방식
 - 가. 1년이상 5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나. 5년초과 10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frac{\text{정년잔여월수} - 60\text{월}}{2}$
- ※ 정년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은 가항 및 나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 특별승진 및 표창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1항 4호
(단, 승진임용제한을 받는자 제외)

7. 本人의 意思에 反한 申請의 排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 퇴직 대상자로 선정, 추천 하여서는 아니된다

8. 其他 詳細한 事項은 地方公務員 名譽退職 手當支給規程을 參考하기 바람.